

공공도서관의 인사체계 개선방안

— 개정된 도서관법에 명시된 1, 2급 사서자격기준에 의한 직급조정문제와 관련하여 —

최 정 태

〈부산대학교도서관학과 교수〉

〈차 례〉

1. 푸는 글
2. 논란이 되는 것들
3. 풀어야 할 문제들
4. 맺는 글

1. 푸는 글

한나라의 문화수준을 볼려면 그 나라의 공공도서관을 보라는 말이 있다. 공공도서관이 이처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교육정도와 의식수준이 모두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공도서관이 각 지역마다 골고루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있는 사서들도 대개 만족한 상태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사회의 높은 인식 그리고 잘 조직된 인사체계에 의하여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의 인사체계 문제는 공공도서관 하나만 가지고 거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타 도서관의 인사체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인사체계만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도서관학 분야의 학자와 단체에 의해 다각적인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정리도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다. 본인은 이 분야에 관해서는 전공상 거리가 있고 충분치 못한 시간관계로 자료조사와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 지지 못했으며, 현장의 사서와도 접촉을 확 인치 못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밝히는 모든 개선방안이나 요구사항들은 반드시 도서관협회측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이 개정선언한 공공도서관 선언(Public Library Manifesto)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계속적인 전 생애를 통한 만민의 교육, 지식과 문화에 이룩한 인류업적의 향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신념을 실증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범 국가적으로 공공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도록 입안한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¹⁾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에 관한 역사는 그 뿌리가 깊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선각자들에 의한 계몽과 노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진지가 오래되었고, 그동안 도서관현장에서 오직 봉사만을 제공한 사서의 활동을 인정해야 하며 이 정도까지나마 도서관을 키워온 국가의 협력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1963년 최초로 도서관법이 제정되고 우리는 이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4반세기 동안 변하지 않는 울타리 속에서 인사처리를

1) 헨리시 캠벨, 공공도서관개발론, 이병목역, 서울:구미무역 1985, p.168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 법은 그 동안의 사회발전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응하는 도서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자체가 너무나 미흡하고 노후하였다.

그리하여 도서관협회와 학회,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자와 현장사서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도서관법이 첫 제정된 24년 만인 1987년 11월 28일에 「개정된 도서관법」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8년 8월 16일 「도서관법시행령」을 대통령령(제12,506호)으로 확정짓게 되었으며, 다시 1989년 3월 25일 「도서관법시행규칙」이 문교부령(제570호)으로 개정을 각각 매듭지음으로서 여기에 관한 모든 행정적 절차는 일단락을 보게 된 셈이다.

개정된 도서관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종전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변혁을 가져 왔으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항목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개정법은 정보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의 개념을 전근대적이고 소극적인 기능수행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 수행의 현대적 도서관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의 설립목적은 전문성에 따라 「대학도서관」을 추가해서 명시하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라든지,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을 자문케 한 것은 중요한 진전사항이라 하겠다. 그리고 개선된 도서관법의 내용 중 「사서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항목은 우리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는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법과 동시행령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을 「정사서」와 「준사서」로 2구분하여 온 것을 앞으로는 이들의 자질과 직급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의 3구분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 시행됨으로써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그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에게는 거의 절대적 지침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대학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의 사서는 각각 그 설립 모기관이 있어 그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자격기준이 도서관마다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설립자가 정부 내지 공공기관으로서 임용에서 승진, 퇴직에 이르기 까지 모두 이 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준거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발달사적으로 보아 그 기능이나 활동, 봉사방법등 발전과정에 비추어 도서관이 지니는 본질적인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도서관활동의 거울이 되고 있다. 이 거울의 실체가 건전하고 분명하여 밝게 비추게 되면 여타 도서관도 같은 수준으로 투영되어 다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모든 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공공도서관이 과연 손색없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른 도서관법은 완벽하며, 또 시행령은 그 모법(母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개정법은 여타의 관계법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유용성은 충분한가를 알아 보아야 한다. 또 어렵게 마련한 새법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박제된 상태에서 머물고만 있지 않을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안이한 마음 가짐을 해 본 일이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2. 논란이 되는 것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그 운영시스템이나 장서의 질과 양, 건물과 시설의 규모와 상태, 그리고 사서요원에 대한 자질과 처우, 시기문제등 인사체계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제 구성요소에서 이를테면 장서, 건물, 사람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를 사람(司書)으로 꼽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서들의 생활의 장(場)이 되고 평생의 업(業)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의 주인은 곧 사서이다. 도서관이 충실히 발전하려면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적 조건과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인사체계가 잘 갖추어져 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긍지를 심어 줄 수 있고, 장애요소를 극소화할 수 있다면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핵심은 곧 「사서」이다 라고 결정지을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집계한 1988년 전국공공도서관의 수는 175개관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서의 수는 2,331명이며, 이중 전문직사서는 805명, 비전문직사서는 1,526명으로 나타나 있다.²⁾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서들에 있어서 그의 위치는 「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행령」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각 부령 및 예규, 시행규칙은 생략)등 실증법상의 체제하에 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속한 사서는 위에 예기된 제반 법적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으면 도서관은 활성화되고 따라서 사서의 사기와 함께 봉사수준도 상승하게 된다. 이 법적 기준은 도서관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전반적인 도서관활동을 좌우하게 되며 나아가 사서의 사기와 의식문제에 까지 파급되고 만다.

전국도서관학과학자연합회(약칭; 전도련)가 전국(강원도, 제주도제외)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477명을 대상으로 1989.1.24~2.10까지 조사 실시한 <공공도서관의 제반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도서관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사서들이 불만족(50%), 대단히 불만족(30.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심각한 문제로는 행정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한 정책부재 175명(36.7%), 도서관수의 절대부족 110명(23.06%), 예산부족 59명(12.3%), 처우개선 47명(9.8%), 등을 꼽았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문화부 신설에 큰 기대를 걸면서(391명: 81.97%) 앞으로 문화부가 생길 경우 도서관행정을 문화부에서 일원화하

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문제가 주체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제기되기까지 그동안 우리 기성도서관인과 도서관학자들은 현장의 실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처하여 왔는가? 그날의 일과에만 급급해서 현실에 너무 안주해 오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이론과 실제의 괴리에서 너무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자문하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들이 서성이고 있을때 1987년 부산대학교도서관학과 학생들에 의해 이른바 <도서관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얻게 하였으며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다. 즉 우리는 도서관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은 남도의 한 지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도서관학과 등의 소속학생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산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조그마한 개혁운동의 파장은 마침내 전국적 규모로 전개되어 도서관 문제는 대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까지 이르러 전반적인 공공도서관 정책문제, 사서의 전문성문제, 공공도서관의 소속관청문제등 다양한 양태로 분출되고 만다.

<전도련>은 이와같은 일련의 현안사항을 가지고 1989.4.7 명지대학교에서 회합을 가졌다. 여기서 이들이 주장 요구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및 국립도서관의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하라
2. 문화부는 도서관 소관업무를 전담하는 국단위의 중앙 행정부서를 설치하라.
3. 사서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먼저 행정직군으로 통폐합된 사서직군을 즉각 분리하라.
4. 현재 사서직에 대하여 4급까지 제한되어 있는 직급승진제한의 부당한 처사를 즉각 철폐하라.

2) 한국도서관통계, 한국도서관협회, 1988. p.10

3) 풀무(부산대학교도서관학과 소식지)창간호 (1989.5.8) p.7

이상과 같이 제기된 사항들은 모두 공공도서관과 연관된 내용으로 결국은 사서의 인사체계가 도서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곧 공공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본 글의 요체이기도 하다.

3. 풀어야 할 문제들

가. 사서의 자격기준 문제

사서직은 도서관에 종사하는 도서관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전문직업명이다. 이들은 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학문을 수학과 일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직업인이다.

사서직의 전문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찍부터 국가가 법률적으로 제도를 설정하여 보호, 육성하고 관리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법상으로 사서직이 처음 선 보인것은 1949년 11월 5일(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08호)부터이다. 이때의 사서직은 단일 직군(職群)으로서 최상위 직급은 3급을류(현5급)에서 최하위급 4급잡류(현6급)으로 독립된 직군속에 중간급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후 이 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서직은 단일 직군으로 존속하지 못하고 1961년 4월 15일(국무원령, 제240호)「학예직군」에 편입되어 「편수직」과 함께 병행되나 편수직은 2급을류(현 3급)에서 3급을류(현 4급)로 상향 조정되지만 사서직의 직급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머문다.

1963년 5월 29일(각령, 제1317호)에 정부개편으로 인해 사서직은 다시 편수직과 함께 「행정직군」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직급의 상향조정은 없고 오히려 하위직급이 늘어 5급을류(현9급)의 최하직에까지 격하되고 만다.

1970년 12월 31일 공무원 임용개정령은 다시 사서직의 상위직급을 하강시켜 최상위급 3급잡류(현4급)에서 3급을류(현5급)로 퇴행의 연속을 보인다(그러나 이때도 「편수직」은 다시 학사직군으로 환원하여 2급을류(현3급)에서 5급을류(현9급)까지 직급의 폭을 상하로 확장하였다.)

1981년 6월 10일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0345호)은 공무원 직급을 1급, 2급잡~5급을류로 호칭하던것을 1급~9급의 9등급으로 변경하면서 사서직의 최상위급은 4급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지만 「편수연구직」은 종전의 3급으로 상향된 상태에서 존속한다.

그 후 다시 198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제11604호)은 연구, 지도, 의료직공무원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사서직을 제외한 편수직등 많은 연구직종은 거의 일반직공무원을 떠나 연구직공무원으로 독립하였으나 1985년 12월 31일 대통령령(제11838호)은 사서직을 지금의 「행정직군」에 소속시켜 행정직군 속에 「사서직렬」을 두게하고 위로는 4급사서관에서 부터 9급사서서기보까지 6등급으로 구분 약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서직을 공무원 임용 연혁에서 살펴보면 국가가 사서직을 오래전 부터 인정하면서도 40년전 사서직종을 처음 설치할 때에 비하여 그 전문성마저 독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직군에 예속시켰으며 직급 또한 하향 조정하므로써 그 법적 지위를 퇴보시켰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와같이 현행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서직이 공무원으로서 그 자격기준 부여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4급사서관은 1급정사서이어야 한다 또는 5급사서관은 2급정사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은 학력과 자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과 사서직이 일반직 공무원에 소속되어 있으니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비전문성의 유추해석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개정된 도서관법과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사서의 자격기준을 3구분으로 설정하여 사서가 되려면 누구나 이 자격요건에 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표는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의 자격요건이다. (<표-1>참조)

이 자격요건에 의하면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 도서관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부터 최하 전

문대학이상의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사서의 자격을 갖춘 직업인임을 포기하여야 한다.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급정사서의 자격을 가지고 6년이상 도서관근무나 연구경력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2급정사서 자격을 가지고 9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학사학위 소지자가 별도로 문교부가 지정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표-1>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외의 석사

자 격	자 격 요 건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 사 서	1. 전문대학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도서관법시행시행령 제5조 관련별표

이와같이 사서가 되려면 교육과 실무경력이 없이는 불가능해서 사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것은 도서관직이 그 만큼 전문성으로서 확고하기 때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함에도 현행 공무원법의 직급상에는 아무런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분명한 법이론상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보아 밝혀지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나. 사서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문제

전술한 바와같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는 그들이 수학하는 고유의 학문 영역이 있다. 이러한 학문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봉사하고 수준높은 도서관을 경영하는 것은 사서만이 가지는 특질일 수 있다.

사서자격의 교육을 수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도서관학 교과과정에서 부터 박사학위 과정의 교과목 내용을 전공 필수와 전공선택과목을 별도로 이수

하여야 한다. (<표-2>참조)

2급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각각 1단계씩 향상하기 위해서는 문교부가 지정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즉 16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하되 30학점 이상을 이수 하므로써 그 지위에 도달할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임용령과 승진규정에서는 이러한 사서의 자격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서 현직에 종사하는 사서가 그들이 1급이나 2급정사서의 자격이 없어도 승진이나 근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자격의 기준이 무슨 쓸모가 있다는 것인가?

<표-2>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목

자격종별	필수 과 목	선택 과 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 제론 도서관시스템 분 석론	도서관학 또는 문헌 정보학 석사·박사학 위 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대학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준 사 서	도서관·정보학개 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I)	전문대학의 도서관과 또는 문헌정보과 교 육과정에서 선택

*도서관법시행규칙 제8조 1항 관련별표

명예 이외에 아무런 실속이 없는 사서의 자격기준

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공도서관사서로서 자격증의 존재가치는 더욱 희미해진다.

그리고 전문사서의 용도는 공공도서관에서만 해당 될 사항이 아니어서 이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지정교육기관은 더욱 필요하고 따라서 교육의 장소와 피교육자의 수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도서관법시행규칙(제7조)은 교육의 장소를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설하는 사서자격 교육기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현실은 「1급정사서」 자격의 과정을 연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방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지방의 대학원과정 도서관학 및 문헌정보학 설치 대학 이외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다. 교육의 수준 향상과 수요전망으로 보아 각 시도 단위에 대학원 과정을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설립 함이 요구되고 교육을 전담할 도서관학 연구소등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한편, 이러한 자격기준은 공공도서관에도 적용하여 도서관장의 임용이나 사서의 임용, 승진이 자격기준에 합당하도록 관계법과 연계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행, 사서직 공무원 임용시험령에서는 5급에서 9급까지 공개채용, 특별채용, 일반승진, 공개승진, 전직시험등에서 제1차시험(필수과목)에는 도서관학과 관계되는 전공과목은 하나도 없다. 다만, 헌법, 문화사, 영어, 국어, 국사, 국민윤리 등이 있을 뿐이다. 다행히 5~7급의 2차시험에는 전공과목이 산개하여 나오고 있지만 8~9급 사서직시험에는 전공과목이 1차시험에도 2차시험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표-3> 참조)

<표-3> 사서직 공무원 임용 시험령

*5급 이상(공채)

-제1차(필수) : 헌법, 문화사, 영어, 한국사, 정보체
계론.

-제2차(필수) :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법,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 정보체계론, 국민윤리.

(선택) : 인문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동양서지 중 1과목.

* 5급(일승, 특채, 전직)

-제1차(필수) : 헌법, 행정법

-제2차(필수) : 자료조직법, 도서관경영론.

* 5급(공송)

-제1차(필수) :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필수) : 자료조직법, 도서관경영론, 국민윤리.

* 6급, 7급(공채)

-제1차(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국민윤리.

-제2차(필수) : 헌법, 자료조직법, 도서관경영론, 전산학개론.

(선택) : 참고봉사론, 자료선택론, 서지학개론, 정보학개론 중 1과목.

* 6급, 7급(특채, 전직)

-제1차(필수) : 헌법, 국어(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제2차(필수) : 자료조직법, 도서관경영론.

* 8급, 9급(공채)

-제1차(필수) : 국어 I, II(한문포함), 영어, 국사.

-제2차(필수) : 국민윤리, 세계사, 사회 I, II, 전자계산일반.

* 8급, 9급(특채, 전직)

-제1차(필수) : 국어 I, II(한문포함), 국사.

-제2차(필수) : 사회 I, II, 국민윤리, 세계사.

이와같이 오류를 범한 관계법도 조속히 수정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다.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성 문제

도서관장은 도서관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반적인 관리능력 뿐만 아니라 도서관 봉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서관인으로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법에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정의 되어 있는 것 처럼 도서관장도 마땅히 전문직이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문교부안에 의해 개정된 도서관법 제23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문적 배경이 없는 어떠한 사람도 도서관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법률의 독소조항이라고 학생들은 지적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95% 이상의 비전문직 도서관장⁴⁾이 대물림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문직의 도서관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서직이 도서관장이 되려면 행정직으로 직렬을 바꾸거나 극히 제한된 다음자리가 나올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 최근 <전도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185개의 공·사립 도서관중 165개관(89.1%)에서 비전문직관장이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5개관의 관장이 타 행정업무(군교육청, 관리과장, 군수, 교육장등)와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서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병원장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⁵⁾ 학생들은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직 도서관장은 전문지식의 결여 이외에도 관장의 자리가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도서관에 대한 사랑과 사명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도서관법이 정사서를 1급과 2급으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관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이러한 법제상의 모순에 문교부가 동의하거나 양해 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또한 지적하고 있다.⁶⁾

이와같은 학생들의 지적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반증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들의 지적이

4) 민주정의당, 국책연구소, 도서관발전방안[1987] p. 14

5) 풀무, 1989. 5. p. 6

6) 같은책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결과적으로 도서관장의 전문성마저 왜곡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을 하루 속히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라. 공공도서관의 소속과 전문부서문제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다 하여도 도서관발전이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을 발전시키겠다는 도서관장의 의지와 사서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발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토록 지원하는 도서관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도서관 전담부서는 도서관에 애정을 가진 도서관인이 도서관의 봉사과 활동만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창한 것은 그동안 도서관협회 뿐만 아니라 기타 협의회와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민정당 국책연구소에서 도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는 도서관에 관한 국가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는 주체적 역할의 전담부서가 없음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 육성의 기본적인 조치로 소관부처인 문교부내에 최소한 과(課) 단위의 도서관 행정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⁷⁾

그러나 이 문제의 선결사항으로 앞으로 신설예정인 정부조직기구로서 「문화부」와의 관계설정이 우선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기능상으로 보아 공공, 대학, 학교, 전문 및 특수도서관이 모두 같은 성격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소속 상급기관을 일원화하여 문교부로 할 것인가? 문화부로 또는 문화공보부로 할 것인가를 확립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이 수립한 기능이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문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수용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은 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므로 「문화부」에 소속할 수 있고, 학교와 대학도서관은 「문교부」에 소속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타 전문 및 특수도서관은 각각 그 소관 부서에 따라 소속 부처로 귀속시킴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 경우 도서관을 총 관리, 감독할 지휘체계는 어느 부서에 둘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맡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 소속 관청은 성격과 구조상 공공도서관이 소속하는 「문화부」에 배치함이 순리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국(局)단위의 「도서관국」이 필요하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전문직 사서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4. 맺는 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낙후성은 관계 당국의 도서관 정책의 부재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관계 법규등의 미비에서 원인을 찾아 내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 논문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제도과 사회여건 이외에도 전문직사서의 전통적 의식에서 유래 한다는⁸⁾ 놀라운 발표가 있었다.

이 논문은 종래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저해요인에서 한걸음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통의식중 특히 체면중시의식, 현세지향의식, 권력지향의식등을 사서의 기준으로써 그 요인을 찾아 본 것이다.

전통의식은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장구한 세월과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아래 배양된다. 그 동안 우리도서관은 그릇된 도서관문화의 불모지속에서, 잘못된 인식된 도서관정책의 그늘 속에서 내가 아닌 남에 의해서 길들여 지고 자라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도서관 의식을 과감히 타파하여야 한다. 개혁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도서관자신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개혁의 임

7) 민주정의당, 국책연구소, 도서관발전방안 [1987] p. 7

8) 박인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12 p. 3~4

무를 떠 맡음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이어 받아야 한다.⁹⁾

그리하여 우리는 도서관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개선하여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도서관문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논증하고 예시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개선방안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인사체계는 도서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여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미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서의 자격기준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서의 임용이나 승진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름뿐인 1급, 2급정사서의 구분이 확연히 나타 나도록 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그리고 관계 부처의 인사규칙이 도서관법과 연계되도록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사서의 자격기준에 따라 그 자격에 합당하는 행정상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지금 공무원법상에 나타난 행정직군내의 사서직렬 4급에서 9급까지 6등급된 것을 「사서직군」을 별도로 신설하고 사서직렬 2~9급 8등급으로 확산, 상위직을 2급까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사서직을 「학사직군」에 편입하고 학예직 혹은 편수직과 같이 연구직을 신설하여 「문헌연구관」 「문헌연구사」 「문헌연구사보」 등의 직명을 보하여 연구기능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사서가 되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과 교육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도서관학 분야의 석사학위 과정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문교부가 지정하는 “지정교육기관”이 교육조건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이후 각 시,도단위마다 도서관학대학

원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우선 잠정적으로 1급정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시, 도단위로 1개 이상을 설치하여 현직에 있는 중견사서(2급정사서)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사서직 공무원의 임용시험령에서 전문직사서를 판단할 수 있는 전공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8급과 9급 시험에는 전공과목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그 전문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전공과목은 2차필수가 아닌 1차필수로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장은 마땅히 전문직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정직을 사서직으로 교체하지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현재 대다수의 행정직관장은 그간의 경력과 노력을 인정해야 하고, 도서관법이 명시하는 1급정사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를 지도, 감독하는 상부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다. 즉 문교부, 시,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곳이 126개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38개관, 문공부, 문화원 소속 도서관이 3개관으로 각각 분산 관리되어 있어¹⁰⁾ 공공도서관의 기능체제가 약화되고 있다.

이를 한 기관에서 통괄하여 지도 감독 행정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종류에 있어서 도서관의 소속관청은 반드시 일원화할 필요는 없고 그 도서관이 지니는 기능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신설될 「문화부」에 소속 시킴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국 단위의 도서관을 위한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전문직사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9) 부산대학교 도서관개척운동자료집, 부산대학교총학생회, 도서관학과학생회 1989. 1~129p

10) 민정당, 도서관발전방안 p.7